IPP장기현장실습 학점인정제 운영에 관한 내규

(제정일 2016.12.1., 최종개정일 2023.7.1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77조(현장학습·창업활동학점) 운영기준에 의거 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변경 2019.6.1.)

제2장 협약체결

- 제2조(협약체결 주체)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을 위한 실습기관과의 협약은 IPP센터 (이하 "센터" 라 한다)에서 체결한다.(변경 2019.6.1.)
- **제3조(실습기관 선발기준)**실습기관은 다음 1~4호까지의 각호 요건중 하나 이상과 5호를 충족시켜야 한다.
 - 1.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- 2.공공기관
 - 3.법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나 단체
 - 4.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 - 5.고용보험 5인 이상
- **제4조(협약사항)**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되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1.실습기간, 시간 및 장소
 - 2.실습지도 담당자
 - 3.실습생에 대한 실습지원비
 - 4.실습기관 정보 및 직무기술서
 - 5.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

제3장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

- 제5조(교육과정 편성)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72조(계절수업 개설), 제73조(개설과목), 제74조 (수강신청기준학점) 및 제77조(현장학습·창업활동학점)에 의거 IPP장기현장실습은 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와 IPP계절수업으로 구성한다.(변경 2017.9.1., 2019.6.1.)
- **제6조(교과목 개설)**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은 참여학과에 한하여 개설할 수 있다.(변경 2019.6.1.)
- 제7조(수강자격)IPP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자격은 참여학과 4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(변경 2017.9.1., 2019.6.1.)

제8조(실습기간 및 학점)①IPP장기현장실습 기간은 4개월, 5개월, 6개월 과정으로 구분한다. 다만, 일학습병행 연계과정으로 현장실습시 2개월 과정이 가능하다.(변경 2017.9.1., 2019.6.1., 2022.1.1.)

②IPP장기현장실습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후 인정학점은 전공학점의 경우 1개월 당 3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고, 교양학점의 경우 일반교양 3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, 실습기간에 온라인강좌 또는 실습시간이 겹치지 않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할 수 있다. 단, IPP장기현장실습을 방학기간에도 참여할 경우 IPP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한학기에 방학기간을 합산하여 성적을 산정할 수 있다. 다만, 수강신청기준학점을 초과할 수없다. (변경 2017.9.1., 2019.6.1., 2022.12.1)

③2개월 과정의 경우 인정학점은 전공 또는 일반교양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.(신설 2022.1.1., 2022.12.1.)

- 제9조(수강대상자 선발)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학부(과)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지원서와 서약서를 IPP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.(변경 2019.6.1.)
- 제10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은 학사처리(학사과정)에 관한 내규 제22조(자격·절차)에 따라 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각 단과대학교학팀 및 학사지원팀에 통보하고 일괄 수강신청 처리한다.
- 제11조(오리엔테이션)IPP장기현장실습 파견 대상자는 현장실습을 수행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여야 한다.(변경 2019.6.1.)
- **제12조(성적평가 및 이수인정)**①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성적은 P(pass) 혹은 N(Non-Pass) 방식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.(변경 2019.6.1.)
 - ②IPP장기현장실습은 재학 중 2회(4개월~6개월)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고 합산하여 최대 10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의 현장실습학기를 연속하여 이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(변경 2017.9.1., 2019.6.1.)
 - ③일반장기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은 IPP장기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으나 8학기 이상 수료자는 참여할 수 있다.(변경 2019.6.1.)
 - ④IPP계절수업을 이수한 후 IPP장기현장실습학기(정규학기)를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IPP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변경 2017.9.1., 2020.5.1., 2023.7.1.)
 - ⑤IPP장기현장실습을 이수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귀책사유를 작성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변경 2019.6.1.)
 - ⑥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(변경 2019.6.1.)
 - 1.총 실습기간 중 1/5이상 무단 결근자
 - 2.실습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자
 - 3.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자
 - (7)IPP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자가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

인정한다.(변경 2019.6.1.)

⑧IPP계절수업 수강료는 OFF-JT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(신설 2017.9.1., 변경 2022.3.1., 2023.7.1.)

제4장 대상자 선발

- 제13조 (자격 및 등록금) ①IPP장기현장실습 신청자격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 편입생의 경우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.(변경 2019.6.1.)
 - ②참여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IPP장기현장실습 철회 또는 취소 시 등록금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.(변경 2019.6.1.)
 - ③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은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30조에 따른다.(신설 2017.9.1.)

제5장 지도 및 평가

제14조 (현장지도)IPP장기현장실습 이수 예정자는 전공지도교수 또는 산학협력교수가 직접 현장실습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.(변경 2019.6.1.)

제15조(성적평가 및 이수인정)①IPP장기현장실습 학기의 성적평가는 월보고서, 종합결과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.(변경 2019.6.1.)

②성적은 전공지도교수, 산학협력교수, 기업체 멘토가 평가하며 평가된 성적은 해당 단과대학교학팀 및 학사지원팀으로 입력을 요청한다.

제6장 기타사항

제16조(준용)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,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	시행한다.	1일부터	12월	2016년	내규는	
부 칙						
부 칙	시행한다.	1일부터	9월	2017년	내규는]
., .,	시행한다.	1일부터	6월	2019년	내규는]
부 칙	시행한다.	1일부터	5월	2020년	내규는	-]
부 칙	기레리미	101 H el	1.01	000013	- 1) ¬ 1 -	1
부 칙	시행한다.	1일부터	T월	2022년	내규는	1
н =1	시행한다.	1일부터	3월	2022년	내규는)
부 칙						

이 내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2항 및 3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 용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